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이 창 배	직 급	6급
소 속	법 무 부	연락처 (email)	chang292@hanmail.net
훈 련 국	일본	훈련기간	2015. 9. 1 ~ 2018. 2. 28
훈련기관	동지사대학(同志社大学)	보고서매수	120 매
훈련과제	장애수용자 처우 및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보고서제목	장애수용자 처우 및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내용요약	< 별 첨 >		

< 별 첨 >

서론

한국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의 개념은 1976년 UN의 『1981년 세계장애인의 날』 선언의 영향을 받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시행을 거쳐 형성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전반에 걸친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반사회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원과 관심과 달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장애수용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법무부교정본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수용자의 재범방지과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수용자에 대한 각종 처우 개선 및 재활훈련을 통한 장애수용자에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장애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교정시설에서는 8개의 장애수용자 전담교도소 및 1개의 장애인 종합재활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수용자 전담교도소는 대부분 30~40년 이상의 낙후된 시설이며, 장애수용자 처우에 대한 전문직과 재활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한국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선진국인 일본의 형사시설에서는 장애수용자 처우와 사회복지지원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 및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장애수용자 복지 및 재활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일본 형사시설에서의 장애수용자의 처우 및 재활프로그램, 출소 후 사회복지지원 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장애수용자의 재범방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의료형무소의 설치·운영,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정신보건복지사, 사회복지사 등을 형사시설에 배치하여 장애수용자의 재활훈련 및 사회복지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개념을 사회복지적 의미로 확대하여 장애수용자가 출소 후 안

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지원을 하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장애수용자 재범방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①형사시설에서의 환자·장애수형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형무소 설치·운영, ②장애수형자의 재활을 위한 작업요법의 실시, ③고령자나 장애수형자의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채용, ④출소 전의 장애수형자의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연계시스템 등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자 처우, 교정의료, 작업요법, 직업훈련, 사회복지사를 통한 사회복지지원과 재활, 장애수용자의 사회복지지원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I. 형무소에 있어서 장애수용자의 처우

1. 개요

일본의 형사시설에서는 수용자가 형사시설에 입소할 때부터 출소할 때까지 수용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성공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는 장애수형자 대상의 재활훈련, 심리상담 및 치료, 작업요법, 교육, 직업훈련 등이 있다. 그 외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고령수형자 및 장애수형자를 위한 출소 후의 주거·취업지원과 관련한 상담, 정보제공 및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출소 후의 사회복지지원 등이 있다. 또한, 출소 후,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갱생보호시설, 구호시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이 있다.

2. 형사시설에서 장애수형자 처우와 관련한 전문직

1) 복지전문관

형사시설에서 복지전문관은 상근 직원으로 수용자 가운데 고령·장애로 인한, 출소 후 자립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복지전문관의 채용조건은 5년 이상의 상담지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복지사이다. 형사시설에서 복지

전문관의 배치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 현재 전국 188개의 형사시설 가운데 34곳에 34명이 배치되어 있다.

2) 사회복지사

형사시설에서 비상근 직원으로, 고령수형자나 장애수형자의 복지 및 사회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형사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배치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 현재 전국 188개의 형사시설 가운데 70곳에 99명이 배치되어 있다.

3) 이학요법사(理学療法士)

“이학요법“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주로 그 기본적 동작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치료체조, 그 외의 운동을 하게 하고, 전기자극, 마사지, 온열 기타 물리적수단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시설에서 이학요법사는 주로 의료형무소에 배치되어 신체장애수형자나 고령수형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지, 재활훈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작업요법사(作業療法士)

형사시설에 있어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나 장애수형자가 주로 수용되는 의료형무소와 PFI형무소 등에 작업요법사가 배치되어 있다. 작업요법사는 환자나 장애수형자의 정신건강치유, 신체기능의 회복, 사회적응능력의 회복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형사시설에서 환자나 장애수형자를 위한 작업요법으로는 수예, 공작, 원예요법, 농업요법 등이 있다.

5) 정신보건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란 정신보건복지사법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과병원 기타 의료시설에서 정신장애의 의료를 맡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추진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의 지역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상담,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상담, 조언, 지도, 일상생활에 적응에 필요한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형사시설에 정신보건복지사가 비상

근 직원으로 배치된 것은 2004년부터이며, 2016년 현재, 하치오지 의료형무소, 오카자키 의료형무소, 오사카 의료형무소, 기타큐슈 의료형무소, 삿포르형무소, 미야기형무소, 후추형무소, 나고야형무소 등 8곳에 배치되어 있다.

3. 장애수형자 처우의 현황

1) 知的장애수형자 처우

전국의 형사시설에서는 知的장애수형자에 대하여 거실배치 시 동료수형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형무작업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경작업(輕作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 즉,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수형자를 대상자로 한자, 산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형사시설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나 수형생활지도 등을 할 때는 글씨를 크게 하고 설명하거나 가급적 쉬운 단어의 사용과 천천히 설명하는 등 知的장애수형자를 배려한 처우를 하고 있다.

2) 정신장애수형자 처우

정신장애수형자는 각 형사시설에서 시설내의 교정의관을 통한 진료, 약물요법치료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외부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진료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형사시설에서 처우가 곤란한 중증의 정신장애수형자는 의료형무소로 이송되어 치료 및 처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형무소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복지사 등이 배치되어 있어, 정신장애수형자에 대한 약물치료 외에 전문적인 상담, 작업요법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신체장애수형자 처우

신체장애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각 형사시설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거실 배치, 이동할 때의 휠체어의 사용, 목욕, 형무작업 등에 있어서 배려하고 있다. 또한 중증의 장애수형자에 대하여는 의료형무소로 이송하여 이학요법사에 의한 신체기능 회복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4. 교정시설의 장애수형자에 대한 의료처우

2017년 현재, 일본의 교정시설 가운데 형사시설은 188시설, 소년원은 52시설, 소년감별소는 52시설, 부인보도원 1시설이다. 전국의 각 교정시설에는 교정의관, 간호사 등의 직원이 배치되어 환자, 장애인, 기타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국비로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다. 형사시설의 의료체계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수용자의 경우, 일반 형사시설에 있는 교정의관을 통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형사시설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환자나 전문적인 재활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수형자의 경우는 9개의(삿포로, 미야기, 후추,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타카마츠, 후쿠오카의 각 형무소 및 동경구치소)의 의료중점시설 및 4개의(하치오지, 오카자키, 오사카, 기타큐슈)의 의료전문시설로 이송되어 치료와 재활훈련 등을 받게 된다.

II. 형무소에 있어서 장애수형자의 재활프로그램

1. 직업훈련

형무소의 수형자에 대한 형무작업은 가능한 한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직업상 유용한 지식 및 기능습득에 도움이 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형자에게 직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시키거나 직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은 전국 형사시설단위인 종합훈련, 각 교정관구 단위인 집합훈련, 각 형사시설 단위인 자청(自庁)훈련 등 3가지가 있다. 참고로,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는 용접과, 건설기계과, 지게차 운전과, 정보처리 기술과, 전기통신 설비과, 이발과, 미용과, 간병복지과 등 32종목이 실시되었다.

장애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현황을 살펴보면, 하리마 사회복지촉진센터, 오카자키 의료형무소 등에서는 신체·知的·정신장애수형자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큐슈 의료형무소·오카자키

의료형무소에서는 정신장애수형자를 대상으로 세라믹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마네아사히 사회복귀촉진센터에서는 정신장애수형자를 대상으로 농원예(農園芸)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知的장애수형자 대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곳은 후추형무소, 키츠레가와 사회복귀촉진센터, 하리마 사회복귀촉진센터, 오카자키 의료형무소, 시마네아사히 사회복귀촉진센터 등 5개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수형자 대부분이 출소할 때까지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형사시설에 수용된 장애수형자의 인원수에 비하여 장애수형자 대상의 직업훈련이 많지 않고,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형사시설 측의 장애수형자의 각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직업훈련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2. 작업요법 등 장애수형자를 위한 요법

형사시설에서는 환자나 장애수형자가 주로 수용된 의료형무소와 민관공동 운영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형무소 등의 형사시설에 작업요법사를 배치하여, 환자나 장애수형자의 정신적 치유나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위한 작업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Ⅲ. 장애수형자의 출소 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복귀지원

형사시설에 수용된 장애수형자에 대한 교정교화, 편의시설의 증진, 재활프로그램 등 시설내 처우도 중요하지만, 출소 후 사회의 복지시설과 자원, 지역사회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이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또한, 장애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사시설과 지역사회의 시·군·구 및 복지시설과 연계된 사회복귀시스템과 상호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와같이 형사시설에서 출소한 장애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된 사회복귀지원단체로서 갱생보호시설, 구호시설, 지역

생활정착지원센터 등이 있다.

일본의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특별한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에서는 법무성과 연계하여 2009년도부터 지역생활정착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밖에 형사시설내의 장애수형자를 위한 재활훈련으로 환자나 장애수형자의 정신적 치유나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위한 작업요법이 있다.

IV. 장애수용자의 처우 및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인터뷰조사

1. 인터뷰조사의 개요

인터뷰조사 협력자가 속한 B형사시설은 긴키지방의 형사시설로 장애수형자의 처우 및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수형자 담당 형무관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고령수형자 및 장애수형자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상근 직원 복지전문관과 비상근 직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다. 수용인원은 약 1,000여명으로 남자수형자만 수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형사시설에 수용된 장애수형자 처우 및 교정의료, 작업요법, 직업훈련,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의 조사, 연구 및 고찰이다.

조사협력자는 장애수형자의 처우담당자 C와 복지전문관 D다. C와 D에 대한 인터뷰조사는 2017년 3월 27일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인터뷰의 평균시간은 1시간이다.

참고로, 본 연구의 인터뷰조사 관련시설 및 조사협력자는 익명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B형사시설 및 장애수형자의 처우담당자 C, 복지전문관 D로 한다.

2. 고찰

형사시설 직원과의 장애수용자 처우 및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인터뷰조사결과, 장애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문제점도 확인되어 다음과 같

이 고찰한다.

첫째, B형사시설에는 장애수용자의 전임 처우담당자가 없다. B형사시설은 장애수용자의 처우에 있어서 장애수용자 전임 처우담당자가 없고, 장애수용자 담당자가 환자 등 휴양자와 처우 곤란자를 함께 관리하고 있어 장애수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처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수용자 처우 향상과 전문적인 처우를 위하여 장애수용자의 전임담당자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수용자 처우와 관련되어 형사시설 간에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다. B형사시설은 장애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다른 형사시설과 정보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수용자 처우에 관한 다른 형사시설과 정보교환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장애수용자 처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서도 문제점이 있다. 전국 형사시설의 장애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형사시설의 장애수용자 처우담당자에 대한 교정연수소 등 교정국 차원에서의 집합교육 등을 통한 교육과 정보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정현장의 작업 등 처우담당 형무관은 장애수용자에 대한 질병과 이해가 부족하다. 이번 복지전문관 D와의 인터뷰에서 형사시설 직원의 대부분인 현장의 처우담당 형무관이 장애수용자의 특성과 장애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수용자에 대한 관리와 상담, 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은 주로 장애수용자 담당 형무관과 복지전문관,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으나, 형사시설에서 장애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이러한 업무관련 직원 이외에 형사시설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장의 처우담당 형무관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수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하여 장애수용자의 업무 관련 부서의 직원뿐 아니라, 형사시설의 모든 형무관이 장애수용자의 특성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직원이 장애수용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체계적 또는 종합적 처우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장애수용자 처우에 대하여 전 직원의 공통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V. 장애인의 사회복지지원에 관한 인터뷰조사

1. 인터뷰조사의 개요

인터뷰조사 협력자는 A시의 사회복지사회소속의 사법복지관련 사회복지사, P현의 R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센터장, P현의 NPO법인의 직원, U시의 Y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직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서 형무소에서 출소한 장애인의 사회복지지원 현황을 파악·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의 확인 및 출소 후의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사회복지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2017년 11월 1일까지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인터뷰의 평균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인터뷰조사 대상시설 및 조사협력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A시의 사법복지관련의 사회복지사, P현의 R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P현의 NPO법인, U시의 Y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조사협력자 S, Q, T, G, V로 한다.

2. 고찰

사법복지와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인터뷰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첫째, 경도(輕度)의 知的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도(輕度)의 知的장애인 중에는 실제로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수첩이 없는 자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통한 빠른 복지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주변의 눈을 의식하여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한 결과, 자신이 장애인임을 모른 채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며 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사회생활에 어려움 속에 생활을 하다가 결국 어른이 되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40대, 50대가 되어 주변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으로 장애인의 판정을 받아 복지 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들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

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생활지도 기록부, 성적부 등을 추적·조사하여 확인 후 장애인수첩의 발급을 통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형무소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인터뷰조사의 결과, 지역사회의 구호시설, 취업지원시설,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등 복지단체 간의 연계는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 복지단체와 형무소와의 연계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점이 있다. 장애수용자의 효과적인 사회복귀 및 형무소와 지역사회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형무소와 지역사회 복지단체의 상호 방문 및 견학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형무소 등에서 출소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배려와 보살핌 체제를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수형자는 형무소 등에서 출소해도,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취업이 어렵다. 특히, 知的장애인의 경우는 이해력이 부족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살아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는 출소자가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거지원과 취업지원 등을 통하여, 출소자에게 무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형무소 등에서 출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지원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인터뷰조사를 통해서 형무소에서 출소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응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장애수형자가 형무소에서 출소하여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知的장애인 대상의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절도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분노의 조절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등의 SST(Social Skills Training)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장애수형자가 출소하여도 재범을 일으키지 않고,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서, 대기인원이 많은 것은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형무소 출소 전에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원 및 복지제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에서는 특별조정 대상자 이외의 출소자도 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담 결과, 실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출소 후 복지지원에 대한 제도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형무소에서 장애수형자가 출소하기 전에 사회복지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知的장애인의 경우 교육하여도 교육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한 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Ⅵ.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지원에 관한 인터뷰조사

1. 인터뷰조사의 개요

이번 인터뷰조사 협력자가 속한 F취업계속지원 B형시설에는 형무소 출소자 등 2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취업계속지원 B형시설은 장애로 인하여, 일반 기업 등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지도함으로써, 이용자의 생산활동에 관한 지식습득과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서 형무소에서 출소한 장애인의 취업지원 현황을 파악·조사·분석한 후, 문제점의 확인 및 장애수용자 출소 후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협력자는 장애인취업지원시설(B형)의 관리자 및 직원 7명이며,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 각 1회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평균시간은 1시간이다. 인터뷰조사 대상시설 및 조사협력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F취업지원시설 및 I, J, K, L, M, O, H로 한다.

2. 고찰

장애인의 취업지원시설의 직원에 대한 인터뷰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첫째, 장애인 취업지원시설(취업계속지원 B형시설)의 직원에 대한 국가의 교육 지원과 교정시설 출소자를 보호지도하고 있는 취업지원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직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장애의 특성의 이해, 장애의 정도 및 장애인의 개성에 따른 대응방법, 상담방법, 작업지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그룹 홈은 장애가 있는 출소자를 보호수용하면 3년간 정부 보조금이 나오지만, 취업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 교정시설 출소자를 받아 주는 사업소가 적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장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과 지역사회와의 접촉 등 관계를 늘릴 필요가 있다. 장애인 특히, 知的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크고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자가 많다. 또한, 일반인과 대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회피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정상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 차별 등이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형무소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교정시설에서 장애수용자의 출소 전, 시설내의 장애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인터뷰조사를 통해서 장애인 특히 知的장애인은 교정시설 출소 후 사회의 규칙과 변화 등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응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장애인의 취업지원시설 이용자는 대부분 知的장애인이다. 知的장애인은 프로그램에서 비디오의 영상을 보면서 교육을 받아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디오의 영상을 통한 집합교육보다, 맨투맨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서 교육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지역사회 봉사자와 복지관
계자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최근, 교정시설은 단순히 수용자를 수용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 수용자가 출소 후,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
범방지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의 사회복귀의
성공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사회복귀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 교정시설에서도 수형자의 재범방지, 인성교육,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일본 형사시설에서의 장
애수용자의 처우, 직업훈련, 작업요법, 교육 등의 재활프로그램, 출소
후, 지역사회복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귀지원의 실태 확인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첫째, 형사시설에서 장애수용자에 대한 처우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
용자의 전임 처우담당자가 필요함과 동시에 모든 직원의 장애수용자의
장애의 특성과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형사시설내에서
장애수용자에 대한 이해는 장애수용자 처우담당 형무관, 복지전문관,
사회복지사 등 업무관련 부서의 직원뿐 만 아니라, 작업장 등 현장에
서 장애수용자와 상시 접하고 있는 형무관 등 모든 직원이 장애수용자
에 대한 공통 인식·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형사시설의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직원간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정시설에서 장애수용자 치료 등 처우와 밀접한 교정의관이
2015년 기준으로 약 2할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수용자의 처우 및 사회
복귀지원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 이번 연구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정의관의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외부
일반병원 등으로의 정기적인 연수기회부여와 교정의관 월급과 외부 의
사의 보수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화된 의료기
기의 교체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셋째, 형사시설에서 장애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부족하다. 형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인원 제한이 있고 장애수형자는 직업훈련의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출소할 때까지 실제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형자는 많지 않다. 일본 법무성 『2016년판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5년, 재입소수형자 가운데, 범행시 무직인 자는 86.4%, 직업이 있는 자는 13.6%이다. 이것은 출소자의 직업의 여부가 재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과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장애수용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이해력의 차이가 커서 교육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개개인의 교육 내용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출소 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형무소 입소후의 사회변화와 규칙, 사회생활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담당자 등의 초빙을 통한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형사시설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비상근 직원이기 때문에, 장애수용자와의 상담, 특별조정을 위한 조사, 사회복지지원 등을 위한 시설내 활동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인터뷰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시설내에서 수용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시설내 보안 등에 관련하여 미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시설내에서 수형자와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형사시설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형무소 등에서 출소한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살핌 체계가 필요하며, 취업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교정시설의 장애수용자 처우 재활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언

①일본의 형사시설에서는 일반 형사시설에서 치료나 재활이 어려운 중증환자나 중증장애수용자를 집중 치료하거나 재활치료하기 위하여, 전국에 4곳의 의료형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는 의료교도소가 없으므로 일반 교정시설에서 치료가 어려운 수용자는 외부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증장애수용자나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나 재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교정시설 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에 대한 부담감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환자 및 장애수용자의 치료와 효과적인 사회복귀지원을 위하여, 의료교도소의 신설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일본에서는 형사시설에 복지전문관,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를 배치하고, 수형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를 약 10년전부터 실시하여, 고령수형자와 장애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교정시설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직의 도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고령수형자와 장애수형자의 처우 개선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하여 전문직의 교정시설에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③또한, 일본에서는 교정시설 출소자 중 고령 및 장애로 인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이 법무성과 연계하여 2011년부터 전국의 都道府県에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고령자·장애인 중, 출소 후의 자립이 어렵고 가족이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게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에서는 교정시설뿐 아니라, 정부의 관련부처와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이 연계하여 고령수형자·장애수형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하여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일본의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설치·운영한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최근에 도입한 제도로 아직까지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고 있는 등 일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도 지적되고 있으나, 장애수

용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의 성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